

	취업지도CA위원회운영규정	규정번호	5-0-15
		제정일자	2008. 3. 24
		개정일자	2026. 7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경민대학교 취업지도CA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취업처장으로 하며,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
(개정 2014.10.6., 2016.1.1., 2020.3.1., 2021.3.1., 2023.9.1., 2026.7.1.)

② 위원회는 입학취업처장, 각 학과 취업지도교수, 직원으로 구성한다.

(개정 2014.10.6., 2016.1.1., 2017.4.1., 2020.3.1., 2021.3.1., 2023.9.1.)

제3조(역할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(개정 2015.9.1., 2016.1.1., 2016.3.1., 2017.9.1., 2026.7.1.)

1. 진로·취업준비 및 지도
2. 진로·취업정보의 수집 및 분석
3. 학과 취업률 관리 및 분석
4. 삭제 <2016.3.1.>
5. 추수지도 및 진로·취업에 관한 제반 사항

제4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 (개정 2016.3.1.)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목개정 적용례) 이 규정의 규정명을 ‘취업지도위원회운영규정’에서 ‘취업지도CA위원회운영규정’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